

## (            )월 방송 실시 결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면)

### 1. 사업개요

법인명(채널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채널구분	방송유형	채널성격	지상파방송사업자 공급
	<input type="checkbox"/> 텔레비전방송채널 <input type="checkbox"/> 라디오방송채널 <input type="checkbox"/> 데이터방송채널	<input type="checkbox"/> 기본채널 <input type="checkbox"/> 유료채널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되지 않음
	방송프로그램 제공 형태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NVOD <input type="checkbox"/> VOD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된 방송분야	채널 또는 주파수		

### 2. 방송분야

#### 가. 전문편성방송사업자

구 분	전체방송	주된 방송분야 (주편성)	기타 방송분야 (부편성)	안내방송 /필러물 등	광고방송
방송시간(분)					
백분율	100%	%	%	%	%

#### 나. 종합편성방송사업자

구 분	전체방송	교양	오락
방송시간(분)			
백분율	100%	%	%
주시청시간대(분)			
백분율	100%	%	%

· 각 방송사업자별로 해당 부분만 기재함.

### 3. 초방/순환

구 분	전체방송	초 방	순 환
방송시간(분)			
백분율	100%	%	%

4. 국내제작물

가. 전체방송

구 분	전체방송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백분율	100%	%	%

나. 영 화

구 분	영화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백분율	100%	%	%

다. 애니메이션

구 분	애니메이션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백분율	100%	%	%	%

• 애니메이션 전체의 방송시간(분)과 백분율은 국내제작물 중 가중치 미적용과 외국제작물의 합임.

라.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구 분	전체방송	신규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백분율	100%	%	%

마. 대중음악

구 분	대중음악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백분율	100%	%	%

• 대중음악은 프로그램 단위로 판단하여 기재함.  
• 각 방송사업자별로 해당 부분만 기재함.

5. 기 타

구 분	비상업적 공익광고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분	분	분

• 비상업적 공익광고 판단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 해당함. [210mm×297mm [백상지(80g/m<sup>2</sup>)]

**1. 편성비율 산정시 제외가능 방송시간**

프로그램명	방송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외 사유

**2. 영화**

가. 영화 목록

프로그램명	편당시간(분)	방송횟수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나. 외국 수입 영화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3. 애니메이션**

가. 애니메이션 목록

프로그램명	편당시간(분)	방송횟수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국내제작 인정일	신규 편성 여부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사후인정의 경우 인정일은 인정예정일을 말함

나.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4. 대중음악

프로그램명	편당시간(분)	방송횟수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5. 비상업적 공익광고

공익광고명	광고주체	회당시간(초)	방송횟수	방송시간(초)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비상업적 공익광고 판단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6.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 해당함.